# 「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6. 8. 31. 개정 판 (시행 2026. 9. 1.) → 2022. 1. 17. 개정 판 (시행 2022. 1. 17.)

바뀜 6 · 신설 0 · 삭제 9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271/compare?from=1802&to=1299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00:3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1조(목적)**<br>이 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의 배정, 선발, 위촉, 복무, 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,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**제1조(목적)**<br>본 운영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**제2조(정의)**<br>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“연구조교 A”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,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.<br>2. “연구조교 B”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,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.<br>3. “수업지원조교”란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.<br>4. “정년트랙 전임교원”이란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.<br>5. “재학생 수”란 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.<br>6. “지도학생 수”란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 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.<br>7. “조교 총수”란 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,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.<br>8. “실적물”이란 논문, 학술발표, 연구보고서, 공연, 전시, 창작,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.<br>9. “최초위촉일”이란 연구조교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서,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연구조교를 위촉한 날을 말한다. 동일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연구조교 A 또는 연구조교 B로 변경 위촉되더라도 최초위촉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.<br>10. “가을학기 대체위촉”이란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,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. 이 경우에도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최초위촉일은 해당 학년도 봄학기 위촉일로 본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**제2조(조교 배정 원칙)**<br>조교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.<br>1. 정년트랙 교수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지도 학생 8명당 조교 1명, 자연계열은 지도 학생 3명당 조교 1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지도 학생 수가 미달되는 경우,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13명 당 조교 1명, 자연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4명 당 조교 1명을 신청할 수 있다.<br>2. 학부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수 1인 기준 연구조교 수를 배정할 수 있다.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3조(운영 원칙)**<br>① 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전체의 형평성과 학과 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.<br>②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, 학위논문, 논문 투고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.<br>③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, 연구조교와 그 목적 및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.<br>④ 연구조교를 수업지원 또는 일반 행정지원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이에 준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, 연구조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.<br>⑤ 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상호 우회 또는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.<br>⑥ 동일 학생은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조교 유형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**제3조(자격)**<br>조교의 자격은 다음표와 같으며 연구조교 A의 자격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확인한다.<br>구분<br>근무시간<br>장학금<br>비고<br>연구조교 A<br>주 20시간 이내<br>월 800,000원<br>연구결과물제출<br>연구조교 B<br>주 14시간 이내<br>월 500,000원<br>연구결과물제출<br>수업지원조교<br>주 7시간 이내<br>월 300,000원<br>수업지원 |
| **제4조(조교의 자격)**<br>① 조교는 본 대학원 정규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.<br>② 연구조교 A는 연구참여 정도가 높고, 학위논문 또는 학술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.<br>③ 연구조교 B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.<br>④ 수업지원조교는 교과목 운영, 수업보조 및 실습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.<br>⑤ 연구조교 A의 경우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br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**제4조(연구조교의 실적물 조건)**<br>연구조교 실적물 조건은 다음과 같다.<br>1. 인문사회계열 '국내중앙학술지(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)', 자연계열 '국내전문학술지(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) 1편 이상 대학원생 저자,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다.<br>2. 통합예술학과(음악학과)의 경우 공동연주 및 공연 참여실적을 연구조교(석사 연구조교) 실적물로 인정한다(연주 및 공연 실적은 삼육대학교 교원 연구 평가 실적에 준함). |
| **제5조(조교의 구분 및 지급기준)**<br>조교의 구분, 근무시간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**제5조(실적물 제출기간)**<br>실적물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.<br>1. 실적물 제출기한은 연구조교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.<br>2. 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학과 해당교수에게 다음 학기 연구조교를 배정하지 않으며 연구조교 배정 시 실적물 미제출 인원수를 제외하고 배정한다. 단, 실적물이 심사 중이거나 게재예정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출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.<br>3. 실적물 미제출로 인한 연구조교 미배정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6조(조교 배정 기준일 및 계열 구분)**<br>① 조교 배정은 매 학기 대학원이 정하는 기준일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.<br>② 계열 구분은 대학원 공식 학과 체계에 따라 인문사회계열, 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한다.<br>③ 학과의 계열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학과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**제6조(조교의 수)**<br>대학원 조교 수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교수 수를 넘지 않는다. 단,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1)항의 지도학생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1인 당 2명의 연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. |
| **제7조(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)**<br>①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.<br>②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지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,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.<br>③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.<br>2.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.<br>④ 수업지원조교는 개설 교과목 수, 실험·실습·실기 운영 여부 및 수업지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.<br>⑤ 학과별 조교 총수는 연구조교 A,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를 합산한 인원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<br>1.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<br>2.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의 2배<br>⑥ 어느 한 종류의 조교를 증원하더라도 제5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<br>⑦ 제3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조교 배정 기준은 예산 범위, 학과별 여건 및 제5항에 따른 총량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한다.<br>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학생 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<삭 제> |
| **제8조(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)**<br>① 학과가 연구조교 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단위에서 수업지원조교 1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br>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는 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,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.<br>③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.<br>④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부여하거나, 수업지원조교에게 연구조교 A의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<삭 제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9조(조교의 업무범위)**<br>①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,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연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br>1. 문헌검색, 자료수집, 조사 및 실험 보조<br>2. 통계분석, 연구노트 정리, 연구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관련 보조<br>3. 논문 초안 정리, 학술지 투고 형식 점검,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보조<br>4. 연구세미나, 프로젝트 회의, 실험실 운영 등 연구 관련 업무 보조<br>5. 그 밖에 연구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·연구 관련 지원업무<br>②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수업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br>1. 학습관리시스템(LMS) 관리, 출석 및 과제 정리<br>2. 강의자료 준비, 수업보조, 실습 운영 지원<br>3. 수업 관련 공지, 강의실 기자재 및 환경 정리<br>4. 그 밖에 수업지원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수업 관련 지원업무<br>③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에게 부여할 수 없다.<br>1. 학과 일반행정 전담업무<br>2. 입시홍보, 민원처리, 제증명 발급, 회계처리 등 상시 행정업무<br>3. 교수의 사적 용무 또는 교육·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<br>4. 대학원생의 학업권과 연구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업무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<삭 제> |
| **제10조(선발 및 위촉)**<br>① 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<br>② 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,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br>③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,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.<br>④ 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.<br>⑤ 조교 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br>1. 조교 신청서<br>2. 학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<br>3.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<br>4. 연구조교 A의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서류<br>⑥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의 구분은 연구참여 정도, 활동계획, 학과 수요 및 예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| <삭 제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결정한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|
| **제11조(연구조교의 실적 기준)**<br>①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는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<br>1. 인문사회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1편<br>2.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지 논문 1편<br>3. 예체능계열은 대학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준하는 공연, 전시, 창작, 발표 또는 작품 실적 1건<br>4. 그 밖에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 1건<br>② 제1항의 논문 실적에서 대학원생은 제1저자, 공동제1저자, 주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 기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.<br>③ 지도교수는 교신저자, 공동교신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.<br>④ 수업지원조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<삭 제> |
| **제12조(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)**<br>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.<br>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.<br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br>1. 논문 심사 중인 경우<br>2. 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<br>3. 질병, 출산, 육아, 휴학,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<br>4. 공연·전시·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<br>④ 대학원은 제출기한 만료 전에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<삭 제> |
| **제13조(실적 미제출에 대한 조치)**<br>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은 다음 학년도 연구조교 신규 배정 시 해당 학과의 배정 인원에서 미제출 인원 수만큼 일괄 차감할 수 있다.<br>②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,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<br>③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.<br>④ 미제출에 따른 차감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| <삭 제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|
| **제14조(권리보호 및 복무관리)**<br>① 대학원은 조교에게 활동시간, 활동내용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.<br>② 조교는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.<br>③ 조교의 학업권, 연구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,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.<br>④ 모든 조교는 위촉 시 복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연구조교의 복무내용은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를 기본으로 한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<삭 제> |
| **제15조(준용)**<br>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, 대학원생 권리장전,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.<br>〈전면개정 2026-08-31〉 | <삭 제> |